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0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개정	3
가. 개요	3
나. 특정외국법인(CFC)의 배당가능 소득 전액 수입배당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적용(박성훈의원안)	5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0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0. 27.
- (3) 회 부 일 : 2025. 10.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 종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효과가 더 큰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2022년 제도 도입 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회사가 누적 유보소득을 전부 배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여 저세율국 자회사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4항제1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개정

가. 개요

□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에 대하여는 ① 외국에서 외국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② 국내 소득에 합산되어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국가에 부담한 세금을 자국의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에는 해외소득면세방식과 외국납부세액방식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 외국납부세액방식을 따르다가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소득면세방식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

해외소득면세방식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OECD 중 우리나라·미국·일본 등 32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되(해외소득도 국내세율 적용), 해외

국가에 부담한 세금을 자국의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OECD 중 이스라엘 등 5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국내기업의 관점에서 국내 투자소득이든 해외 투자소득이든 동일한 세부담을 함으로써 대내외 투자소득 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인 반면, 해외소득면세방식은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타국 기업과 동일한 세부담을 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해외소득면세방식의 비교]

구분	해외소득면세방식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중전)
개념	내국법인에 대해 국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해외소득은 현지세율 적용)	내국법인에 대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해외소득도 국내세율 적용)
도입국가 (OECD)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32개국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콜롬비아

나. 특정외국법인(CFC)의 배당가능 소득 전액 수입배당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적용(박성훈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18의4) ○ (익금불산입 대상) ①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16 ※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 (익금불산입의 적용 제외) ①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 및 배당 간주를 적용받은 금액 ② 특정외국법인(CFC)의 <u>수입배당금액</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국내에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수령시 익금 불산입 적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축소) ② 특정외국법인(CFC)의 <u>수입배당금액(각 사업 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경우 제외)</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 행	개정안
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 (익금불산입률) 95%	

* 박성훈의원안 2025. 10. 27. 발의(의안번호 13707)

□ 개정안은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은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실질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 부담세액이 외국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현행 법인세율에 따른 최고세율 중 70퍼센트 이하이며, ②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의미함.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이하 “간주배당금액”)으로 봄.¹⁾

현행법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의 적용 제외로²⁾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text{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times \text{「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2)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간주배당금액 및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³⁾ ② 특정외국법인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⁴⁾ ③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액]

(단위:개, 억원)

귀속연도	모법인수	특정외국법인수	간주배당금액
2019년	50	84	6,505
2020년	51	85	6,562
2021년	60	114	6,454
2022년	61	148	15,103
2023년	60	110	7,614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여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 3) 이는 내국인이 해외의 저세율국(예컨대, 조세피난처 등)에 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고 배당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국내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4) 「법인세법 시행령」
-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이하 제19조의2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 한다)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특정외국법인의 누적 유보소득이 국내환류가 제약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로 배당한 경우에 한정하여 특정외국법인의 당해연도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특정외국법인의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가 촉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국내 기업은 이를 원화 자산 투자·R&D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투자여력이 회복되고, 자본시장의 유동성 역시 확대되어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소득을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경우, 과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특정외국법인제도는 소재지국(원천지국)에서는 저율과세된 소득에 대해, 우리 과세당국이 해당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일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원천지국에서 저율과세된 소득에 대해 국내 배당 시에도 비과세할 경우 과세공백이 발생하며,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⁵⁾

문 의 처
02)6788-5158

5) 동 개정안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은 모회사에 우선 배당가능소득을 전액 배당하고 필요한 자금을 모회사가 다시 해외에 송금하는 등 CFC 과세 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음.